

IBM 기본계약서

본 'IBM'기본계약서(이하 '계약')는 '고객'과 한국 IBM 주식회사(이하 'IBM')간의 '기계' 구매, 'ICA 프로그램' 라이선스 부여, '프로그램' 라이선스 획득, '서비스'(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유지정비 '서비스' 등을 포함)제공을 위한 거래에 적용된다.

제 1 부 일반조항

제 1 조 계약구조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5 부로 구성된다.

제 1 부 일반조항

계약구조, 부속서류 및 거래서류, 용어 정의, 조건의 수락, 인도, 대금청구 및 지급, 계약 조건의 변경, IBM 비즈니스 파트너, 지적 재산 보호, 책임 제한, 상호 일반 원칙, 계약해지, 계약적용 지역 및 준거법

제 2 부 보증

IBM 보증, 보증의 범위

제 3 부 기계

제작 상태, 소유권 및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 설치, 기계 코드(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 코드 포함)

제 4 부 ICA 프로그램

라이선스, 분산 시스템 라이선스 옵션, 프로그램서비스, 준수 확인, 라이선스 종료

제 5 부 서비스

인력, 자료에 대한 소유권과 라이선스, 고객 리소스, 기계에 대한 서비스(보증기간 이내와 그 이후), 보증 서비스 업그레이드, 유지정비 범위, 서비스의 자동 갱신, 서비스의 해지

제 2 조 부속서류 및 거래서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추가 조건은 'IBM'이 제공하는 '부속서류'와 '거래서류'에 명시된다. 일반적으로, '부속서류'는 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거래서류'(작업명세서, 부칙, 보증계약서, 청구서, 별첨, 변경 인가서 또는 부록 등)는 해당 거래에 관련된 특정 조건을 포함한다. '고객'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거래서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부속서류'와 '거래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해당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개별 거래는 다른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거래이다.

본 '계약', '부속서류', '거래서류'의 조건들이 상충하는 경우, '부속서류'의 조건이 본 '계약'의 조건에 우선하고 '거래서류'의 조건은 본 '계약'과 '부속서류'의 조건에 우선한다.

제 3 조 용어 정의

고객설치기계 '기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고객'이 설치하는 'IBM'기계'.

설치일

- 가) 'IBM'에게 설치 책임이 있는 'IBM'기계'의 경우, 'IBM'이 '기계'를 설치한 날 혹은, '고객'이 설치를 연기한 경우, 'IBM'이 '기계'를 차후에 설치하기로 한 날.
- 나) '고객설치기계'와 비-IBM'기계'의 경우, 표준운송 허용기간의 마지막 날.
- 다) '프로그램'
 - (1) 기본사용권의 경우, '프로그램'의 표준운송 허용기간의 마지막 날.
 - (2) 사본의 경우, 'IBM'이 '고객'에게 '프로그램' 사본 제작을 허용한 '거래서류'에 명시된 날짜.
 - (3) 유상의 구성요소(또는 기계부속장치)의 경우, '고객'이 유상의 구성요소의 사본을 사용한 날. '고객'은 유상의 구성요소의 설치일을 'IBM'에 통지하는데 동의한다.

지정기계

- 가) '고객'이 'ICA프로그램'을 사용할 목적으로 'IBM'에게 형식/모델과 일련번호를 지정한 기계, 혹은

나) 'IBM'이 가)항의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ICA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

기업집단	해당 법인(예를 들어, 주식회사) 과, 그 법인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회사. '기업집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ICA프로그램	본 '계약' 제4부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IBM'프로그램.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	'IBM'이 지정한 특정 'IBM' '기계' (이하 '지정기계')에서 사용되는 '기계코드'.
기계	하드웨어 디바이스, 기계부속장치, 변경된 장치, 업그레이드, 기계부품, 액세서리 또는 이들의 결합. '기계'는 'IBM'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IBM' '기계'와 비'IBM' '기계'를 포함(기타 장비 포함).
기계코드	'기계'의 기능을 작동하게 할 목적으로 '명세'에 기술된 대로 'IBM' '기계'와 함께 인도된 마이크로코드, 기본 입출력 시스템코드('BIOS'), 유틸리티 프로그램, 디바이스 드라이버 진단장치 및 기타 코드(단,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IBM'이 '고객'에게 인도하는 문서형태 및 기타 형태의 모든 저작물로서, 이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코드, 서류, 보고서, 그와 유사한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자료'는 '프로그램', '기계코드',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 및 계약서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IBM프로그램	제3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
기타IBM프로그램	별도의 'IBM'라이선스계약(예를 들어, IBM International Program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IBM' '프로그램'.
제품	'기계' 또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음 각 항의 원본과 사본(전체사본 또는 일부사본)을 의미한다. 가. 기계가 판독 가능한 명령어와 데이터. 나. 구성요소. 다. 음성/영상 내용물(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녹음 또는 영상) 및 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관련 자료들. '프로그램'은 'IBM'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ICA프로그램', '기타IBM프로그램' 그리고 '비IBM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기계코드',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 또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IBM'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작업수행, 컨설팅 및 자문, 지원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접속. (예를 들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
명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IBM' '기계'에 대한 명세는 '공식 발행 명세', 'ICA프로그램'에 대한 명세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가동환경	'ICA프로그램'이 해당 '명세'대로 가동되도록 만들어진 기계와 프로그램.

제 4 조 조건의 수락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부속서류' 및 '거래서류'의 조건을 수락한다.

- 가) 해당 '부속서류' 및 '거래서류'에 서명 날인(수기 또는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한 경우.
- 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

'IBM'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고객'의 주문을 수락한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 가) '고객'에게 '거래서류'를 송부한 경우.
- 나) '고객'에게 '기계'를 인도하거나 '프로그램'을 가용케 한 경우.
- 다)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부속서류'나 '거래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제 5 조 인도

'거래서류'에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인도일은 인도 예상일이다. 해당되는 경우, 운송비는 '거래서류'에 명시된다. 'IBM'이 '고객'에게 유형의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과 'IBM'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BM'은 'IBM'이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 운송과 인도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제 6 조 대금청구 및 지급

1. 대금청구

'거래서류'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 및 다음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청구방법이 명시된다.

- (가) 일시불 청구
- (나) 반복적 청구
- (다) 시간 및 발생비용에 따른 청구
- (라) 고정 가격 청구

여건에 따라 추가 대금(예를 들어, 특수처리비용 또는 출장관련경비)이 적용되기도 한다. 추가 대금이 적용되는 경우 'IBM'은 이를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품'에 대한 반복성 대금은 '설치일' 이후 개시된다. '서비스' 대금은 '거래서류'에 명시된 대로 청구되며, 사전에 청구되거나 '서비스' 시행 중 정기적으로, 혹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 청구된다. 본 '계약'(해당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 포함)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1) '고객'은 선지급이 이루어진 '서비스'를 해당 계약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2) 'IBM'은 지급기일이 도래했거나 지급된 대금에 대해 환급하거나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거래서류'에 시간 및 발생 비용에 따른 청구 또는 사용량에 근거한 청구 방식에 의해 예상되는 총대금을 명시한 경우, 예상 대금은 (대금 지급의) 계획수립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IBM'은 실제 사용 시간과 발생 비용, '고객'의 실제 사용량 또는 허가된 사용량에 근거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명시된 최소 사용량 약정을 따른다.

2. 사용 대금

일시불 및 반복적 청구는 실제 사용량 또는 허가된 사용량(예를 들어 '기계'의 허가된 용량, '프로그램'의 사용자 수 또는 프로세서 용량, 유지정비 '서비스'의 검침 수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객'은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명시된 대로 실제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만일 사용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기계'의 허가된 용량이나 '프로그램'의 프로세서 용량 또는 구성의 변경),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IBM'에 통지하고 그에 따른 해당 대금을 지급할 것에 합의한다. 반복적 청구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IBM'이 측정 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측정 방법이 변경 대금에 적용된다.

3. 대금 변경

'IBM'은 때에 따라 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 '고객'은 가격 인하 유효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금에 대해서 가격 인하 혜택을 받는다.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IBM'은 3 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와 최저 비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대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인상분은 'IBM'이 통지시 명시한 발효일 이후 첫번째 청구일 또는 첫번째 청구 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IBM'은 일시불 대금을 통지 없이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시불 대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1) 'IBM'이 인상 발표일 이전에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고 2) 'IBM'이 '고객'의 주문을 접수한 후 3 개월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 가) 'IBM'이 '고객'에게 '기계'를 인도하거나 '프로그램'을 가용케 한 경우
- 나) '고객'이 '프로그램'의 인가 받은 사본을 만들거나, 다른 '기계'에 청구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적용한 경우
- 다) 인상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합리적인 통지로서, 'IBM'은 본 '계약'에 따라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와 대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고객'의 영업시간 중에 '고객'의 사업장소에서 영업 방해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고객'은 1) 이러한 확인 작업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록, 시스템 도구 결과물, 기타 전자적 또는 하드카피 방식의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2) 이러한 확인 작업의 결과로 결정된 추가 유효 대금 또는 기타 채무를 지체없이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4. 지급

'고객'은 '거래서류'에 명시된 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한다. '고객'은 연체료를 포함해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대금은 'IBM'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신 송금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수단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5. 조세

만일 과세관청이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 대해, 'IBM'의 순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세금, 공과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고객'은 면제 증명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고객'은 'IBM'이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제품'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IBM'직원이 통상적인 조세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및 세금 관련 비용이 적용된다. 'IBM'은 '고객' 부담의 이러한 추가 세금 및 세금 관련 비용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며 'IBM'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계약 조건의 변경

'고객'과 'IBM' 상호간의 거래관계의 융통성을 위해, 'IBM'은 '고객'에게 적어도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된 조건은 'IBM'이 통지시 명시한 발효일 이후에 새로 이루어지는 주문, 만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거래 그리고 연장 가능한 계약기간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연장 가능한 계약기간부 거래의 경우, '고객'은 'IBM'에게 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을 연기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다음의 경우에 변경된 조건이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 변경 적용일 이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주문하는 경우, 2) 다음 연장 기간 개시 전까지 변경을 연기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 3) 변경을 통지 받은 후에 거래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 4) 변경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거래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대금에 관한 변경 사항은 제 1 부 제 6 조 대금청구 및 지급에 명시된 내용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IBM 비즈니스 파트너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판촉, 영업, 지원하기 위해 'IBM'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 조직 (이하 'IBM 비즈니스 파트너')이 있다. '고객'은 'IBM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기타 공급업체가 판촉 또는 영업활동을 한 'IBM'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 그러나 1) 본 '계약'하의 '거래서류'가 해당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이 적용되며 2)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급업체는 'IBM'과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한다.

'IBM'은 'IBM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행위나 진술, '고객'에 대한 'IBM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무사항, 'IBM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 간의 계약하에서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지적 재산 보호

본 지적 재산 보호 조항에서 '제품'이라 함은 '기계', '프로그램', '자료', '기계코드' 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를 말한다.

1. 제 3 자 청구

'IBM'이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제 3 자로부터 특허 또는 저작권 침해청구가 있을 때, 'IBM'은 자기 비용으로 '고객'을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 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또는 'IBM'이 동의하는 화해에 따라 총비용,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를 부담한다. 단, 이와 같은 'IBM'의 방어와 비용 부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객'은 다음에 합의한다.

가) '고객'은 제 3 자의 배상청구에 대해 'IBM'에게 지체 없이 서면통지하고,

- 나) '고객'은 방어 및 화해교섭을 위한 권한을 'IBM'에게 부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구제수단

전항의 배상 청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BM'은 '고객'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최소한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고객'은 'IBM'의 이러한 대안 제공에 동의한다. 'IBM'이 상기의 어떤 대안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제품'을 'IBM'에게 반환하며 'IBM'은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후 '고객'에게 크레딧으로 제공한다.

- 가) '기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순 장부가액
- 나) 'ICA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이 지급한 총액 또는 12개월간 지급할 총액 중 적은 액수
- 다)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고객'이 지급한 총액

3. 'IBM'이 책임지지 않는 청구

'IBM'은 다음의 원인에 기인하는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가)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는 제 3자가 제공하여 '제품'에 결합 또는 부착된 것, 혹은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는 제 3자에 의한 설계, 명세, 지시에 따른 'IBM'의 작업수행
- 나)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는 제 3자에 의한 '제품'의 개조 또는 적용되는 라이선스 및 제한사항에 따르지 않고 'ICA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IBM'이 제공한 것이 아닌 다른 제품, 하드웨어 디바이스, 프로그램, 데이터, 장치, 방법 또는 프로세스를 '제품'과 결합, 연계운영, 연계사용한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 운영,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침해
- 라) '고객'의 '기업집단' 범위 밖에서의 '제품' 공급, 운영, 사용 또는
- 마) 비'IBM' '제품' 또는 '기타 IBM 프로그램' 단독에 의한 침해

본 지적 재산 보호 조항은 제 3자에 의한 지적 재산 침해 배상청구와 관련한 'IBM'의 모든 의무이며, '고객'에 전속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제 10 조 책임 제한

1. IBM의 책임 사항

'IBM'의 본 '계약'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IBM'으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IBM'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포함)에 관계없이, 본 '계약'에 의거 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각 '제품' 또는 '서비스'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총 배상청구에 대한 'IBM'의 책임은 직접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원 또는 청구 원인이 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반복적 청구의 경우, 12개월분 상당액이 적용된다)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에서 '제품'이라 함은 '자료', '기계코드' 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책임 제한은 'IBM'의 하도급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IBM', 그 하도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최대 한도이다. 단, 다음은 손해배상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상기 제 1 부 제 9 조 지적 재산 보호에 따른 'IBM'의 지급
- 나) 'IBM'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 동산에 대한 손해

2. 'IBM'이 책임지지 않는 사항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IBM', 'IBM'의 하도급업체,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그 발생 가능성을 통보 받은 경우에도 다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데이터의 분실 또는 손상
- 나) 특별 손해, 부수손해, 징벌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 다) 기대이익, 영업기회, 매출, 또는 예상 비용 절감의 미실현으로 인한 손실 또는 영업권에 대한 손실

제 11 조 상호 일반 원칙

1. 통지 및 의사교환

수령 당사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를 포함한 서면 의사교환은 해당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명시된 주소(물리적 주소,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상호간의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하여 의사를 교환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 및 팩스 전송의 이용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의사 교환 내용은 서명 날인으로 간주된다. 모든 전자 문서에 포함된 사용자 식별 코드 (이하 '사용자 ID')로 발신인의 신원과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한다.

2. 양도 및 재판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무효이다. 양 당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동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자신의 '기업집단' 내에서 또는, 합병이나 기업 양수도에 따른 승계기업에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IBM'은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 본 '계약' 하의 대금청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단, 'IBM'이 'IBM'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여 'IBM'의 모든 고객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는 계약의 양도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고객'은 'IB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서비스'도 재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무효이다.

'고객'은 '고객'의 '기업집단'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구입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자에게 재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

- 가) '고객'이 '기계' 대금에 대해 리스여신을 받기 위해 '기계'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경우 또는
- 나) '고객'이 '기계'를 할인 또는 특별혜택 없이 구매하고, 그 '기계'를 'IBM'이 승인한 재판매업자들과 경쟁하여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

3. 법률 준수

'IBM'은 정보 기술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한다. 'IBM'은 본 '계약'에 의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포함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 요건을 확인할 책임이 없으며, 본 '계약' 하에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IBM'의 계약조건 또는 '고객'의 구매가 해당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없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각 당사자는 특정 용도 또는 특정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미국 수출입 통제법을 포함한 해당 수출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4. 분쟁 해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 의견의 불일치 또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1)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로부터 발생한 또는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소송 원인이 발생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형태의 법적 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며, 2) 해당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 및 그러한 소송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5. 기타 상호 관계에 대한 원칙

- 1) '고객'과 'IBM'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기업집단' 포함)의 상표, 상호 또는 기타 다른 명칭을 광고 또는 인쇄물에 이용할 수 없다.
- 2) 기밀 정보의 교환은 별도의 서명 날인된 기밀정보 수령합의서에 따른다. 그러나 본 '계약'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교환되는 기밀 정보에 적용되는 기밀정보 수령합의서는 본 '계약'에 통합되고 본 '계약'에 따른다.
- 3)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거래는 '고객'과 'IBM'간의 대리점, 합작 또는 파트너십을 구성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경쟁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취득, 제공하기 위하여 제 3 자와 유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선스와 권리만을 부여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다른 라이선스 또는 권리(특허에 따른 실시권 포함)는 직접적, 묵시적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부여되지 않는다. 본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는 '고객'이 해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료될 수 있다.
- 5) '고객'은 사업 운영 장소에 상관없이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이하 '미국 IBM 본사') 및 그 자회사(및 승계자 및 지명인, 도급업체 및 'IBM 비즈니스 파트너')에 'IBM'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IBM'과 '고객'의 비즈니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업무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6)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거래는 제 3 자를 위한 어떠한 권리나 소송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IBM'은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상기 제 1 부 제 9 조의 지적 재산 보호에 따른 제 3 자의 '고객'에

대한 청구와 상기 제 1 부 제 10 조 책임제한에 따른 'IBM'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신체상해(사망 포함), 부동산 또는 유체 동산의 손해에 대하여는 'IBM'이 책임진다.

- 7) '고객'은 '고객'의 비즈니스 관행 및 운영과 관련한 권장 사항을 실행하는 결정을 포함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8) 본 '계약'에 의해 어느 일방의 승인, 수락, 동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불합리하게 지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된다.
- 9)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0) 'IBM'이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고객'은 별도의 요금 없이 '고객'의 시설, 시스템, 정보, 직원, 리소스를 'IBM'이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접근(원격 접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IBM'은 '고객'이 이러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기타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IBM'의 의무 이행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 해지

양 당사자는 적용되는 해당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거나 종료된 이후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이선스' 종료와 '서비스'의 해지는 각기 제 4 부와 제 5 부에서 규정된다.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그 특성상 지속되는 조건은 이행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각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

제 13 조 계약 적용 지역 및 준거법

명시적으로 달리 부여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률의 저촉에 관계없이,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고객'과 'IBM'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해석, 시행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는 것에 '고객'과 'IBM'은 동의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불가능 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유효하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 또는 제한될 수 없는 강행법규상의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 부 보증

제 1 조 IBM 보증

1. IBM 기계에 대한 보증

'IBM'은 'IBM'기계'에 대하여 재료와 제작 기술상의 결함이 없으며 '명세'와 일치함을 보증한다.

'IBM'기계'에 대한 보증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시작되는 정해진 기간으로 한정되며 '거래서류'에 명시된다. 'IBM'은 보증 기간 동안 해당 'IBM' 기계'에 대해 지정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IBM' 기계'에 대한 수리와 교환 '서비스'를 별도의 요금 없이 제공한다. 'IBM'기계'가 보증 기간 동안 보증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1) 'IBM'이 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2) 최소한 기능상 동일한 '기계'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환불을 위해 'IBM'에 '기계'를 반환할 수 있다.

보증기간 동안 및 그 이후의 '기계'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조건은 제 5 부에 규정되어 있다.

2. ICA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IBM'은 보증된 각 'ICA 프로그램'이 '명시된 가동환경' 하에서 사용될 때 '명세'와 일치함을 보증한다.

'IBM'은 보증 기간 동안 결함에 관련된 '프로그램'서비스'를 별도의 요금 없이 제공한다. '프로그램'서비스'는 보증된 'ICA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 제품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제공된다. 'ICA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기간은 그에 대한 '프로그램'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때 종료된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1년 동안에 보증된 대로 'ICA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고 'IBM'이 이를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우, '고객'은 'ICA 프로그램'을 반환할 수 있고 '고객'이 해당 라이선스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환불된다. 환불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ICA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기간 중에(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인 조건은 제 4 부에 명시되어 있다.

3. IBM 서비스에 대한 보증

'IBM'은 'IBM' '서비스'에 대해 본 '계약',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기술된 내용(인수 기준 포함)에 따라 적절한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고객'은 보증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IBM'이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서면 통지한다.

4. 시스템에 대한 보증

'IBM'은 '고객'에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제품'들을 제공한다고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명시한 경우, 'IBM'은 해당 '제품'들이 호환성이 있으며 '명세'에 따라 설치될 경우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 보증은 'IBM'의 다른 해당 보증에 추가되어 적용된다.

제 2 조 보증의 범위

상기 보증은 오용('IBM'의 서면 승인 없이 '기계'의 용량 또는 가용량에 대한 사용을 포함), 사고, 개조, 부적절한 물리적 또는 운영상 환경, '명시된 가동환경'과 다른 환경에서의 운영, '고객'이나 제 3 자에 의한 부적절한 유지정비 또는 'IBM'의 책임이 없는 제품에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BM' '기계'에 대한 보증은 '기계'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가 제거 또는 변형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보증은 '고객'에만 속하는 유일한 보증이며,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대신한다.

1. 보증이 되지 않는 사항

'IBM'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단 또는 오류 없이 운영된다거나 'IBM'이 모든 결함을 수정할 것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IBM'이 보증하지 않는 'IBM' '기계'와 'I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한다.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IBM'은 '자료', 비 'IBM' '제품'('고객'의 요청에 따라 'IBM' '기계'와 함께 제공되거나 'IBM' '기계'에 설치된 것을 포함), 비 'IBM' '서비스'를 일체의 보증 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비 'IBM' 제조자, 개발자, 공급자 또는 발행자의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기타 IBM 프로그램'과 '비 IBM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있을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될 수 있다.

제 3 부 기계

제 1 조 제작 상태

각 'IBM' '기계'는 새 부품으로 또는 사용된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 '기계'는 새 '기계'가 아니고, 이전에 설치된 '기계'일 수도 있다. 상기 어느 경우에도, 제 2 부에 명시된 'IBM'의 해당 보증 조건이 적용된다.

제 2 조 소유권 및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

'IBM'은 모든 대금을 수령한 때 '고객' 또는 경우에 따라 '고객'의 임대인에게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부속장치, 변경된 장치 또는 '기계'를 위해 구입한 다른 형식의 업그레이드의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IBM'은 그 소유권 또는 경우에 따라 'IBM'의 소유가 되는 분리된 모든 부품의 소유권 이전을 유보할 수 있다.

각 '기계'에 대하여, 'IBM'은 '고객'에 대한 인도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의 인도를 위하여 'IBM'이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인도한 시점까지 '기계'에 대한 분실 및 파손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위험 부담한다. 각 '기계'에 대하여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되는 시점까지 'IBM'은 '고객'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분실 또는 파손 시, '고객'은 반드시 1) 인도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IBM'에 분실 또는 파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2) 적용되는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3 조 설치

1. 기계 설치

‘고객’은 인쇄물에 명시된 ‘기계’의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

‘IBM’은 표준 설치 절차를 가지고 있다. ‘IBM’은 (‘고객’이 설치를 연기한 ‘기계’ 또는 ‘고객설치기계’를 제외하고) ‘IBM’기계’ 표준 설치 절차에 따라 ‘IBM’기계를 설치한다.

‘고객’은 ‘고객설치기계’와 비 ‘IBM’기계를 ‘IBM’ 또는 그 ‘기계’의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시에 따라 설치할 책임을 갖는다.

2. 업그레이드 및 엔지니어링 변경

본 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라는 용어는 부속장치(또는 기능) 및 변경된 장치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IBM’은 ‘기계’에 설치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판매하고, 일부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주어진 지정된 ‘기계’에 설치할 목적으로만 판매한다. 업그레이드의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객’은 업그레이드의 설치에 동의하고, ‘IBM’에 설치책임이 있는 경우, ‘IBM’이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IBM’은 거래를 종료할 수 있고 ‘고객’은 ‘고객’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반환해야 한다.

‘고객’은 ‘IBM’이 ‘기계’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변경(안전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다.

많은 업그레이드 및 엔지니어링 변경은 부품의 제거 및 제거된 부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IBM’으로 이전이 필요하다. ‘고객’은 업그레이드나 엔지니어링 변경의 설치시 제거된 모든 부품을 ‘IBM’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해당되는 경우, ‘고객’은 소유자와 담보권자로부터 1) 업그레이드 및 엔지니어링 변경을 설치하고 2) 제거된 부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IBM’으로의 이전에 대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고객’은 모든 제거된 부품이 정품이며 변경되지 않았고 양호한 작동 상태임을 보증한다. 제거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은 제거된 부품의 보증 또는 유지정비 ‘서비스’ 상태를 승계한다.

‘IBM’ 유지정비 ‘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계’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보증의 만료 후 ‘고객’이 서면으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유상 유지정비 ‘서비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 4 조 기계 코드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 포함)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를 포함한 ‘기계 코드’는 함께 제공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고객’의 본 ‘계약’조건 수락은, ‘기계 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IBM’의 해당 ‘기계 코드’ 라이선스 계약과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에 대한 ‘계약’을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계 코드’에 대한 ‘IBM’ 라이선스 계약과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에 대한 ‘IBM’계약의 최신 버전은 다음 URL 에서 확인하거나 http://www.ibm.com/systems/kr/machine_code.html, http://www.ibm.com/systems/kr/licensed_internal_code.html 또는 ‘IBM’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계 코드’라이선스 계약과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에 대한 계약은 ‘IBM’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된 라이선스 조건은 수정 조건의 발효일 이후에 제공된 ‘기계 코드’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에만 적용된다.

‘기계 코드’는 ‘기계’의 ‘명세’대로 ‘기계’가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한 사용에 한해 그리고 ‘고객’이 ‘IBM’의 서면 승인을 획득한 용량 및 기능에 한해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고객’은 ‘기계 코드’를 본 ‘계약’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추후 승인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대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해당 라이선스에 추가 제한사항을 한정하지 않고서는 ‘고객’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 가) ‘IBM’이 ‘기계’ 사용자 문서나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 코드’를 복사, 전시, 전송, 조정, 수정, 배포(전자적 또는 그 이외의 방식으로)
- 나) 강행법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 코드’를 역어셈블링, 역컴파일링, 다르게 번역 또는 역엔지니어링
- 다) ‘기계 코드’의 라이선스 재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
- 라) ‘기계 코드’나 그 사본을 리스

‘미국 IBM 본사’, 그 자회사 또는 제 3 자는 ‘기계 코드’의 저작권을 포함하여 ‘기계 코드’와 ‘기계 코드’의 모든 사본(원본, 사본, 사본의 사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기계 코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며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IBM’이 ‘기계 코드’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부속장치, 변경된 장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공급할 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특정 ‘기계’의 용량은 ‘기계 코드’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내부코드’의 기술적 측정에 의해 제한된다. ‘고객’은 ‘기계’ 용량을 제한하기 위한 ‘IBM’의 해당 기술적 측정의 구현에 동의한다.

제 4 부 ICA 프로그램

제 1 조 라이선스

'IBM'이 '고객'의 주문을 수용하는 경우, 'IBM'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고객'의 '기업집단' 내에서만 'ICA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ICA 프로그램'은 '미국 IBM 본사', 그 자회사 또는 제 3 자가 소유하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고 라이선스만 부여되는 것이며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1. 승인된 사용

각 라이선스에 따라 'IBM'은 '고객'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 가) 'ICA 프로그램'의 기계 관독 가능 부분을 '지정기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정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다른 기계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지정기계'가 'ICA 프로그램'을 어셈블 또는 컴파일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다른 기계에서 'ICA 프로그램'을 어셈블 또는 컴파일할 수 있다.
'고객'이 'IBM'에 이미 통보한 '지정기계'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그 변경 내용과 발효일을 'IBM'에 통지하는데 동의한다.
- 나) '고객'이 획득한 승인 범위 내에서 'ICA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다) 승인된 사용 범위 내에서 'ICA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다. 단, 각 사본 또는 일부 사본에 원본 'ICA 프로그램'에 표시된 저작권 및 소유권 고지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다.
- 라) 'IBM'이 1) 소스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2) 용도 제한 표시(예: 'Restricted Materials of IBM')를 한 'ICA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ICA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된 장애를 해결하는 경우
 - (2) 다른 제품과 연계 사용하기 위하여 'ICA 프로그램'을 개조하는 경우

2. 고객의 추가적인 의무

각 'ICA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객'은 다음에 동의한다.

- 가)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 '명세',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명시된 추가적 또는 각기 다른 조건을 준수한다.
- 나) 'ICA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로컬 또는 원격 접근 포함)는 '고객'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ICA 프로그램'에 관한 'IBM'의 조건을 준수한다.
- 다) 모든 복사본의 기록을 보관하고 'IBM'의 요청 시 'IBM'에게 제시한다.

3. 고객의 금지 사항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 가) 강행법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ICA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링, 역컴파일링, 다르게 번역 또는 역엔지니어링하는 행위.
- 나) 'ICA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재사용권을 부여, 양도, 대여, 리스하거나 '고객'의 '기업집단' 밖으로 전송하는 행위.

제 2 조 분산 시스템 라이선스 옵션

'고객'은 일부 'ICA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산 시스템 라이선스 옵션(Distributed Systems License Option, 이하 'DSLO') 하에서 사본(이하 'DSLO 사본')을 만들 수 있다. 'IBM'은 'DSLO 사본'에 대하여 원본 라이선스(이하 '기본 라이선스')보다 적은 요금을 적용한다. 적은 요금을 적용 받는 대신 '고객'은 'DSLO' 하에서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의한다.

- 가) 'ICA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라이선스'를 보유한다.
- 나) '기본 라이선스'가 설치된 장소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의 장애 관련 문서를 전달하고 '프로그램' '서비스'(제공되는 경우)를 받는다.

다) 'IBM'이 '기본 라이선스'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개정판, 정정 또는 우회조치를 'DSLO'의 '지정기계'에 배포 및 설치한다.

제 3 조 프로그램서비스

'IBM'은 보증된 'ICA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IBM'이 '명시된 가동 환경'에서 '고객'이 보고한 장애를 재현할 수 있는 경우, 'IBM'은 오류 정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상의 제약 또는 우회조치를 취한다. 'IBM'은 최신 버전의 'ICA 프로그램'중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IBM'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1) 지속적으로(이 경우 최소 6 개월 전 서면 통지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제공하거나 2) 'IBM'이 명시한 날까지 또는 3) 'IBM'이 명시한 기간 동안 제공한다.

제 4 조 준수 확인

'고객'의 사용 데이터와 사용 대금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BM'의 권리에는, '고객'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ICA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모든 환경에서 '고객'의 'ICA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본 '계약'(해당되는 '부속서류'와 '거래서류'를 포함)의 기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IBM'이 외부 감사와 서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IBM'은 해당 확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고객'의 'ICA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이 'IBM'의 해당 라이선스 및 가격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서면 기록, 시스템 도구 결과물 그리고 기타 시스템 정보를 생성, 보유하며 'IBM'과 그 감사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IBM'은 '고객'이 본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조의 권리와 의무는 '고객'에게 'ICA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부여된 기간 동안과 그 이후 2년간 계속 유효하다.

제 5 조 라이선스 종료

'고객'은 'IBM'에 1 개월 전 서면 통지로 언제든지 'ICA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이 일시불로 취득한 'ICA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제공 가능한 경우, 대체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 요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고객'이 이러한 대체 'ICA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IBM'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체되는 'ICA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는 사용료 지급 기일에 종료되는데 동의한다.

'고객'이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BM'은 '고객'의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고객'이 'ICA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종료된다.

제 5 부 서비스

제 1 조 인력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작업을 이행할 인력을 배치하고 각자의 인력에 대하여 감독, 지시, 통제 및 급여 지급의 책임이 있다. 전문내 내용에 준하여 양 당사자는 그 직원과 도급업체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IBM'은 하도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IBM'은 여전히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자료에 대한 소유권과 라이선스

'IBM'은 '고객'에게 인도될 '자료'를 명시한다. 'IBM'또는 제 3 자는 '자료'의 저작자이며 '서비스' 수행 기간 동안 작성된 '자료' 또는 그 이외의 기간(예를 들어 '서비스' 기간 이전)에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IBM'은 '고객'에게 명시된 '자료'의 사본 1 부를 제공한다. 'IBM'은 '고객'에게 '고객'의 '기업집단'내에서만 이러한 '자료'의 사본을 사용, 실행, 복제, 전사, 이행, 배포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사용료가 완납된 전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고객'은 본 조에서 부여된 라이선스하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본에 원본의 저작권 과 소유권 표시를 하기로 한다.

일방의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와 그 계열사는 '서비스'의 수행 중에 일방에 의해 개발되거나 제공(구두 또는 서면으로)된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을 영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고객 리소스

'고객'이 'IBM'에 '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시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 '고객'은 'IBM'이 해당 '서비스'를 이행하고 '자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리소스와 관련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획득하는데 동의한다. 'IBM'은 '고객'이 이러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즉시 획득하지 못하여 받게 되는 모든 부담 및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고객'은 이러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여 'IBM'에 발생한 비용이나 기타 금액에 대하여 'IBM'에 변제하는데 동의한다.

'부속서류' 또는 '거래서류'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고객'은 1)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IBM'에 제공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책임지고,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 암호화, 사용, 전송에 관한 절차와 통제를 선택하고 실시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3) 데이터베이스와 저장된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4 조 기계에 대한 서비스 (보증기간 이내와 그 이후)

1. 기계에 대한 서비스

'IBM'은 해당 '명세'에 부합되도록 '기계'를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특정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IBM'은 '고객'에게 해당 '기계'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를 통지한다. 'IBM'은 'IBM'의 판단에 따라 1) '명세'와 부합하지 않는 '기계'를 수리 또는 교환하고 2) 해당 '서비스'를 '고객'의 장소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한다. 'IBM'은 'IBM' '기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예방 유지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IBM'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속장치(또는 기능), 변경된 장치 또는 업그레이드는 1) 해당되는 경우, '기계' 일련번호가 붙은 지정된 '기계', 2) 해당 부속 장치, 변경된 장치, 또는 업그레이드와 호환성이 있는 엔지니어링 변경 수준에 있는 '기계'에 설치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형태상 '고객'이 'IBM'에 '명세'와 부합되지 않는 '기계'를 인도할 경우, '고객'은 해당 '기계'를 적절하게 포장하여 'IBM'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며 'IBM'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운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IBM'이 그 '기계'를 수리하거나 교환한 후에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IBM'은 해당 '기계'를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반환한다. 'IBM'은 1) 'IBM'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또는 2) 'IBM'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운송 중에 발생한 '고객'의 '기계'에 대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진다.

'고객'은 다음에 합의한다.

가) '고객'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기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로부터 'IBM'이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확보한다.

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은 'IBM'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다.

(1) 'IBM'이 제공하는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요청 절차를 따른다.

(2) '기계' 내의 모든 프로그램, 데이터,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3) '기계'가 설치된 장소가 변경되면 'IBM'에 통지한다.

다) 'IBM'이 제공한 '서비스' 지침('IBM'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거나 혹은 다른 전자적 매체를 통해 복제된 '기계 코드' 및 기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설치를 포함)을 따른다.

라) '고객'이 어떠한 이유로든 'IBM'에 '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1) 'IBM'이 기계와 함께 제공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과 다음의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를 '기계'로부터 안전하게 삭제한다. 1)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정보('개인 정보') 2) '고객'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와 기타 데이터. '개인 정보'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은 이를 익명으로 만드는 등 그러한 정보의 형태를 변화시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더 이상 개인 정보로 간주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에 있는 모든 비 유형적인 저장물을 제거하여 'IBM'에 반환한다. 'IBM'은 해당 '기계'와 함께 제공하지 않은 저장물이나 프로그램, 또는 '고객'이 'IBM'에 반환하는 '기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IBM'은 본 '계약'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계'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IBM'의 장소 또는 제 3자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으며 '고객'은 'IBM'의 그러한 운송을 허용한다.

2. 교체

‘기계’ 또는 부품의 교환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경우, ‘IBM’이 제거한 ‘기계’ 또는 부품은 ‘IBM’의 소유가 되고 교체품은 ‘고객’의 소유가 된다. ‘고객’은 제거된 모든 ‘기계’ 또는 부품이 정품이며 개조되지 않은 것임을 보증한다. 교체품은 새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작동 상태가 양호하고 교체된 ‘기계’ 또는 부품과 최소한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제거된 ‘기계’ 또는 부품에 적용되었던 보증 또는 유지정비 ‘서비스’는 교체품에 그대로 적용된다. ‘IBM’이 ‘기계’ 또는 부품을 교환하기 전에 ‘고객’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모든 부속장치, 부품, 옵션, 변경된 부분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고객’은 1) 부품 또는 ‘기계’의 교체에 있어서 법적 제약이 없도록 하고 2) 제거된 부품 또는 ‘기계’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IBM’에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일부 ‘IBM’ ‘기계’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IBM’이 교체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교체품은 1) ‘기계’ 부품(이하 ‘고객 교체 부품’ 혹은 ‘CRU’. 예를 들어 키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또는 2) 전체 ‘기계’가 될 수도 있다. ‘고객’은 ‘CRU’ 또는 ‘기계’ 교체품을 설치해주도록 ‘IBM’에 요청할 수 있지만 설치 비용이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다. ‘IBM’은 언제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기계’에 대한 정보와 교체 지침을 제공한다. ‘IBM’은 결합이 있는 ‘CRU’ 또는 ‘기계’를 ‘IBM’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교체품과 함께 운송된 자료에 명시한다.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반환 지침과 포장기를 교체품과 함께 운송한다. ‘IBM’이 결합 있는 ‘CRU’나 ‘기계’를 ‘고객’이 교체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 교체품에 대해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리 또는 교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수리 및 교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액세서리, 재고용품, 배터리, 프린터 카트리지 등의 소모품, 프레임, 커버 등의 구조물.
- 나) 오용, 사고, 변경,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또는 운영 환경, 또는 ‘고객’이나 제 3 자의 부적절한 유지정비로 인해 손상된 ‘기계’
- 다) ‘기계’ 또는 부품의 식별 라벨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된 ‘기계’
- 라) ‘IBM’이 책임지지 않는 제품으로 인한 고장
- 마) ‘기계’를 개조하는 ‘서비스’ 혹은
- 바) ‘IBM’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용량 또는 가용량을 사용중인 ‘기계’에 대한 ‘서비스’

제 5 조 보증 서비스 업그레이드

일부 ‘기계’에 대하여 ‘고객’은 해당 ‘기계’에 대한 표준 보증 ‘서비스’로부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 ‘IBM’은 보증기간 동안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고객’은 보증기간 동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해지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다른 ‘기계’로 이전할 수 없다.

제 6 조 유지정비 범위

‘고객’이 ‘기계’의 유지정비 ‘서비스’를 주문할 경우 ‘IBM’은 유지정비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짜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IBM’은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기계’를 검사할 수 있다. ‘기계’가 ‘서비스’를 받을 적합한 상태가 아닐 경우, ‘고객’은 ‘IBM’에게 일정대금을 지급하고 유지정비가 가능한 상태로 ‘기계’를 복구하도록 하거나 유지정비 ‘서비스’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IBM’의 유지정비 ‘서비스’에 대하여 ‘IBM’은 ‘고객’에게 해당 대금을 청구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자동 갱신

갱신이 가능한 ‘서비스’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 8 조 서비스의 해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서비스’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비스’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해당 ‘부속서류’와 ‘거래서류’에 명시된 모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조정 요금을 지급한 경우, ‘고객’은 ‘IBM’에 대한 통지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지정비 '서비스'의 경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고객'은 'IBM'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조정 요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IBM'은 '고객'이 선지급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지정비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미사용 비율에 따른 크레딧을 제공한다.

- 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을 '고객'이 '고객'의 '기업집단' 내에서 생산적인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고객'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시설 매각 또는 폐쇄)
- 다) 최소한 1년 동안 '기계'에 대한 유지정비 '서비스'를 받아왔고 '고객'이 'IBM'에 유지정비 '서비스' 해지에 대한 1개월 전 서면 통지를 한 경우

'고객'은 'IBM'에 1) 'IBM'이 제공한 '서비스'와 '서비스' 해지 시까지 'IBM'이 제공한 '제품' 및 '자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 '서비스' 해지 시까지 'IBM'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고객'은 또한 해당 조정 요금 또는 해지료를 지급하며 그러한 해지로 인해 'IBM'에 발생한 비용('IBM'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IBM'은 '고객'에게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서비스'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그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IBM'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IBM'이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IBM'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비례 배분에 의한 대금을 환급한다.

해지이후에도 그 특성상 지속되는 조건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각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해당 '부속서류'와 '거래서류'를 포함한 본 '계약'은 '고객'의 '기계' 구매, 'ICA 프로그램' 라이선스 부여, '프로그램' 라이선스 획득 및 'IBM'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에 대한 완전한 '계약'이며 '고객'과 'IBM'간에 있었던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의사교환을 대신합니다.

본 '계약' 및 '부속서류', '거래서류'를 체결함에 있어, 어느 당사자도 다음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의 예상 완료일, 시간 또는 대금 2) 본 '계약' 제 2 부에 명시된 보증 이외의 '제품' 또는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 3) 상대방의 경험 또는 권고 사항 4) '고객'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 또는 비용 절감 효과. '고객'과의 서면 의사교환 시 언급되어 추가되거나 혹은 달라진 조건들(예: 구매 주문)은 무효입니다.

양 당사자는 수기로, 또는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적으로, 본 '계약'(또는 이를 참조로 통합하는 다른 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각자의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일단 서명 날인하고 나면

가. 신뢰할 수 있는 수단(예를 들어, 전자 이미지, 복사기 또는 팩스)으로 복제된 본 '계약', '부속서류', '거래서류'의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나. 본 '계약'하에 '고객'이 주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고객':

'IBM':

 서명/날인
 직함:
 성명 :
 날짜:
 '고객' 번호:
 '고객' 주소:

 서명/날인
 직함:
 성명 :
 날짜:
 '계약'번호:
 'IBM'주소: